

협회 제출 서류

■ 제출서류 (협회서식)

1. 협회 회원 가입원서
2.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발급신청서
3. 사업용 화물자동차 취업(채용)보고서
4. 개인정보 제공(처리) 동의서

■ 개인서류 (사본 제출)

5. 운전면허증 사본 1부
6.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1부
7.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
8. 사진 2매

(반명함판 사진 2매)

■ 협회 가입비 및 회비

가입비: 300,000원

회비: 매 월 10,000원

■ 미가입시 수수료 및 관리비

자격증명발급수수료: 30,000원

관리비: 매 월 5,000원

(협회 제 수수료 및 분담금 징수규정 제 3조에 의한 금액)

■ 농협 281-01-137254

예금주 : 강원도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※ 입금 후 반드시 협회로 연락 바랍니다

■ 주소 및 연락처

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안마산로 214

퇴계금호아파트 상가동 2층 (우: 24424)

☎ Tel : 033-254-3221 / 033-257-8878

Fax : 033-257-9880



강원도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협회 회원 가입 원서

※ 안내

본 원서는 협회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작성·제출하는 선택서류입니다.
협회 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며, 관련 허가·신고 등 행정절차의 필수 제출서류가 아닙니다.
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신청인 정보	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연락처			
	차량번호			
작성 목적 및 활용 범위	<p>① 본 원서는 협회 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작성·제출합니다.</p> <p>② 협회 가입은 선택사항이며,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</p> <p>③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 정관, 운영방침 및 회비 관련 기준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처리됩니다.</p> <p>④ 가입 시 가입비 300,000원, 월회비 10,000원을 협회 기준에 따라 납부합니다.</p> <p>⑤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탈퇴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, 미납 회비가 있는 경우 정산 후 처리될 수 있습니다.</p>			

본인은 위 안내사항을 확인하였으며, 협회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
아래와 같이 협회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:

(서명)



강원특별자치도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강원개인소형화물협회 협회가입 혜택

본 협회는 가입 시 회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복지사업과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해당 기준에 부합할 경우 협회 내부 심사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

1. 장학금 지원

고등학교·대학교 재학 중인 회원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급하며, 협회의 선발 기준에 따라 이사회에서 검토 후 장학금을 수혜합니다.

2. 각종 포상 추천

회원의 공로와 근속을 고려하여 아래 기관의 표창·감사장을 추천합니다.

- 국토교통부 장관
- 강원특별자치도지사
- 전국개인소형화물연합회 회장
-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
-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장
- 강원경찰청장
- 강원개인소형화물협회 이사장
- 강원도협회 장기근속자 표창(25년)

3. 경로 위로금 지급

회원 본인이 만 65세 도달 시 소정의 경로 위로금을 지급합니다.

4. 경로 회원 협회비 감면

회원 본인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협회비의 50%를 감면합니다.

5. 화물복지재단 재해 위로금 지원

회원 본인에게 교통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단 기준에 따라 위로금을 전달합니다.

6. 차량 점검 지원

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용 화물차 차량점검·정밀 안전점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일정과 접수는 협회에서 별도 안내합니다.

7. 안전장치 부착 지원

후부반사지·후미등 등 차량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하며, 협회 안내에 따라 비용 지원 또는 장착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

강원특별자치도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화물운송 종사자격증(명) 발급/재발급 신청서

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신청내용	자격증 번호	등록 연월일		
	운전면허증 번호			
	신청 사유			
	정정내용			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8·제18조의9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(명)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강원특별자치도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화물운송 자격증(명)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급: 사진(2.5cm×3.5cm) 1장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: 사진(3.5cm×4.5cm) 2장화물운송 종사자격증(명)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재발급: 화물운송 종사자격증(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, 사진(2.5cm×3.5cm) 1장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재발급: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(자격증명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), 사진(3.5cm×4.5cm) 2장
------	--

사업용화물자동차 취업(채용) 보고서

상기인은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·양수(신규허가 포함)와 관련하여 상시차량에 대한 운전자 취업(채용) 사실을 신고하고자 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.

※ 본 보고서는 상시차량에 대한 운전자 취업(채용) 사실 확인 및 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자료입니다.

신청인 정보	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	
	주소			
	연락처			
	차량번호			
작성 목적 및 활용 범위	<p>① 사용목적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·양수(신규허가 포함) 후 상시차량에 대한 운전자 취업(채용) 사실을 신고하기 위함</p> <p>② 활용범위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 신청인 및 차량 현황 확인, 협회의 기록관리 및 관계 행정업무 처리</p> <p>필요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청될 수 있음</p>			

위 본인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·양수(신규허가) 허가를 받고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에 따라 상시차량에 대한 운전자 취업(채용) 사실을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고인: _____ (인)



강원특별자치도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

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

상기인은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9조에 따라 강원도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, 제18조(개인정보 이용·제공의 제한)에 근거하여,

협회의 회원 관리 및 관련 행정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또한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,
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협회 규정에 따라 일부 행정업무의 수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
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.

※ 제공된 개인정보는 강원도개인소형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의 아래 항목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활용됩니다.

개인정보항목	성 명	
	주 소	
	연 락 처	
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	<p>■ 개인정보 제공</p> <p>① 제공기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교통안전공단, 통계청, 손해보험사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</p> <p>② 사용목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운전자 관리 관리비 납부·정산을 포함한 협회 행정업무 수행</p> <p>③ 제공범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동의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</p> <p>④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자가 운수사업자 또는 운전자로 재직하는 기간</p>	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법규에 의거하여
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.

20 년 월 일

성 명 : _____(인)